

2022

05

통권 465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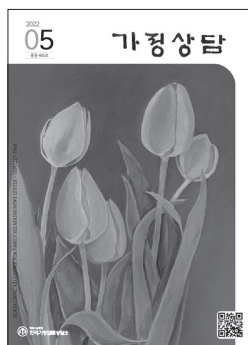


지난 4월 8일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 등이 내소하여 곽배희 소장과 민간 법률구조법인의 발전 방향 및 상담소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관련 기사 33면)



본소에서는 4월 26일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15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 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오늘의 청렴, 내일의 우리를 지킨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분홍튤립〉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 ② 다문화가정
- 17 • 특집 ❷ | 2021년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소송구조 분석
- 2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③
- 28 • 가정폭력상담실
- 30 • 어떻게 할까요
- 32 • 좋은 책
전쟁과 가족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과 국가를 다시 생각하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21세기 초반 우리 사회는 높은 이혼율로 들쭉였습니다. 인구 1천 명당 건수를 말하는 조이혼율이 2002년 3.0, 2003년 3.4로 최고점을 경신하던 때였습니다. 이미 상담소는 낮은 혼인율, 높아지는 이혼율,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가져올 여파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이혼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하락하여 2015년부터는 2.1 그리고 지난해 2021년에 이르러서는 2.0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아지는 조이혼율과 더불어 조혼인율의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이혼율이 최고점을 기록하던 2002, 2003년 조혼인율은 6.3이었고 2004년의 경우 6.4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혼인율은 3.8입니다. 낮아지는 조이혼율에는 마찬가지로 낮은 조혼인율이 있습니다. 물론 조이혼율과 조혼인율의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굳이 이야기해 보면 혼인을 하지 않으니 이혼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을 지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당연히 가정 문제 또한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많은 가정이 지역봉쇄와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구성원 특히 부부 간 갈등, 마찰이 심해졌고 이로 인한 이혼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양상

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구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이혼은 오히려 줄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계 가족을 제외한 시가, 처가 등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가족 갈등이 완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서구와 달리 혼인을 가족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우리 사회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이혼 상담의 경우 2020년 4,239건에서 2021년 4,616건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부 간 성격 차이나 경제문제 등으로 갈등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가족 사이 갈등과 마찰이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함께 보아야 할 노년 이혼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혼인·이혼 통계와 상담소의 상담 통계가 같은 맥락을 보이는 부분이 노년 이혼의 확연한 증가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평균이혼연령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이혼율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지속기간 30년 미만 이혼은 감소한 반면, 30년 이상 이혼은 전년에 비하여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상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 상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1년 4.5%에서 2011년 9.2%, 2021년 25.7% 그리고 60대 이상 남성은 2001년 7.7%, 2010년 15.0%에서 2021년 47.7%로 증가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여성은 2.8배, 남성은 3.2배 증가하였으며 2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은 5.7배, 남성은 6.2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혼 상담을 위해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최고령자 남성은 89세, 여성은 85세였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들은 모두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무시와 소외, 고립과 빈곤 그리고 불안을 호소합니다. 평화롭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여전한 삶의 고뇌와 무게를 내려놓을 수 없어 조금이라도 그 무게를 덜어 보고자 상담소를 찾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고령화 사회의 그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깊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털어주는 일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정의 현실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서 더불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이번 기회에 상담소는 이러한 시기이기에 더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화상상담이라는 새로운 비대면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을 원칙으로 상담을 해온 상담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상담의 새로운 장을 모색한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목표를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해지는’ 그 리하여 국민이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담소에서 늘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리,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가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가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법률구조의 역사를 써오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에 헌신해 온 상담소가 지금이야말로 그 빛을 발해 이제까지보다 더 넓고 깊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남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국가의 근본적인 과제와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5월에 맞이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삶에도 더 없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 ②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출발할 때부터 갈등 유발 요인 안고 시작하는 경우 많아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꾸준히 증가 추세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보다 2배 더 많아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1.8배 증가

한국인 남편 방문 66.2%, 외국인 아내 방문 33.8%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 많아

남편이 17세~30세 이상 연상인 경우 27.5%

한국인 남편의 70.1%,

외국인 아내의 95.6% 보유재산 없어 매우 빈곤

한국인 남편

- 다툼 때마다 증거 수집하는 아내, 나도 이혼 원해!

- 아내가 다툼 때마다 증거 수집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다. 귀국하자마자 아내는 가정을

팽개치고 일자리만 알아보러 다녔다. 특하면 집을 나가 안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였다. 또 어디서 들었는지 혼자 자해를 하거나 부부싸움 중에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다. 어떤 때는 일부러 싸움을 유발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데리고 쉼터에 가서 숨어 지내다 오곤 하였다. 내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자주 하였다. 아내의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나도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내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너무 힘이 들어 이혼하고 싶다.

외국인 아내

- 남편의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나를 내쫓아,
이혼 후 한국에 남고 싶어!

- 남편의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남편

이 나를 때려 내가 데리고 온 아들과 남편 간에 몸싸움이 났다. 그 뒤로 남편이 나를 내쫓아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에 빚만 있었다. 내가 열심히 벌어 남편 빚도 갚고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은 내가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하게 했고, 내 여권도 빼앗아 가서 주지 않았다. 계속 체류하려면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데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인 아내

- 생활력 없는 남편이 일만 벌려 놓고 본국으로 간 후 오지 않아!

● 남편이 본국으로 간 후 오지 않는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여성)

이태원에서 모로코 남자를 만나 혼인하고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나보다 10살 연하이다. 남편은 생활력도 없고 외도도 하였다. 3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어려 내가 일을 못했고 결국 내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몰라라 했다. 남편은 온라인으로 본국에 있는 물건들을 파는 장사를 한다며 일만 벌려 놓고 본국으로 건너간 후 오지 않고 있다. 남편이 모로코에 있으면서 물건 값만 받고 물건을 팔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혼하는 방법은?

외국인 남편

-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 원해!

● 아내의 계속된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 원하는 사례(내담자 40대 미국 남성)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목사로 활동 중이다. 소개로 아내를 만나 혼인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미국 입국의 목적으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 아내는 성격파탄자였다. 아내의 계속된 폭언과 칼부림 등의 폭력적인 행위로 혼인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더 이상은 아내를 믿을 수 없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총 건수는 1,245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027건(82.5%),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18건(17.5%)이었다.¹⁾

상담소 다문화 이혼상담 건수,
실제 서울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2022년 3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173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16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1,245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은 다양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혼 절차 및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였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

1)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여성 117명, 남성 1명)도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표기함.

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 주요 발견 사항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1.8배 증가(2011년 37.5%→2021년 66.2%)

상담소 방문 비율,
한국인 남편 66.2%, 외국인 아내 33.8%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보다 2배 더 많아

연령대, 한국인 남편은 50대,
외국인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17세~30세 남성이 연상 27.5%
(일반가정 이혼상담 5.2%)

교육정도,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낮아
(중졸 이하 비율, 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 11.2%)

재혼 비율 37.8%(일반가정 이혼상담 15.6%)

보유재산 없는 비율,
한국인 남편 70.1%, 외국인 아내 95.6%

혼인신고 후 36.7% 별거 중
한국인 남편은 자신의 아내 폭행,
기타, 아내의 가출 순으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행, 자신의 남편 폭행,
기타 순으로 이혼상담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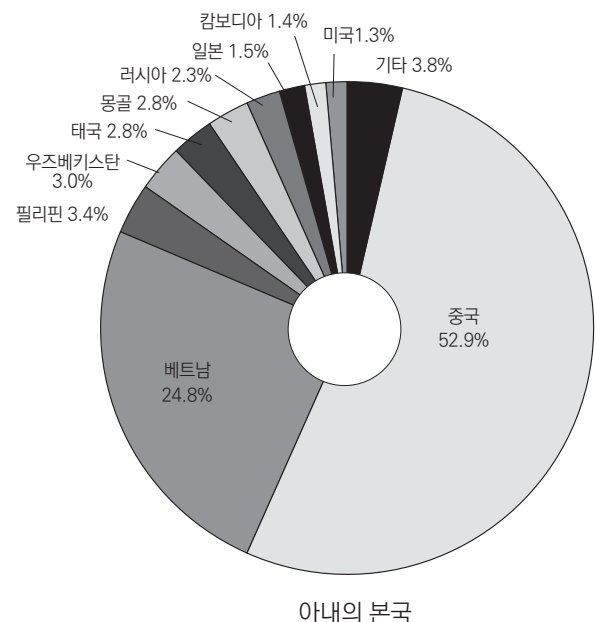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 방문 33.8%, 한국인 남편 방문 66.2%

한국인 남편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 이혼상담보다 약 2배 더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1,027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47건(33.8%),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680건(66.2%)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2.0배 많았다.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에 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아(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8년 68.4%, 2019년 61.8%, 2020년 65.0%, 2021년 66.2%)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태국·몽골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1,027명 중 중국이 543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55명(24.8%), 필리핀 35명(3.4%), 우즈베키스탄 31명(3.0%), 태국·몽골 각 29명(각 2.8%), 러시아 24명(2.3%)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7.5%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343명(33.4%), 50대 241명(23.5%), 40대 221명(21.5%), 20대 92명(8.9%), 60대 이상 85명(8.3%)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397명(38.7%), 40대 297명(28.9%), 60대 이상 255명(24.8%), 30대 74명(7.2%), 20대 2명(0.2%)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20명(1.9%),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847명(82.5%),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113명(11.0%), 미상인 경우는 47명(4.6%)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7~30년 차이가 233명(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9~10년 118명(13.9%), 7~8년 91명(10.7%), 15~16년 83명(9.8%), 1~2년 82명(9.7%), 11~12년 79명(9.3%), 3~4년·5~6년 각 59명(각 7.0%), 13~14년 40명(4.7%), 31년 이상 3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2년 차이가 103명(9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년 5명(4.4%), 7~8년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아내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나와 20살 차이가 난다. 2012년 혼인했고, 딸 둘을 두었다. 나는 재혼이었고 아내는 초혼이었다. 작년에 아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아내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였고, 그곳에서 사귀 동료들과 주말마다 외박을 일삼아 갈등이 심하다. 아내는 자신이 19세 때 혼인해 전혀 놀지 못했고 나

와는 세대차이가 많이 나서 답답하다고 한다. 아내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아내가 계속 이대로 생활한다면 이혼하고 싶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20대 캄보디아 여성)

나는 22살이고 남편과 25살 차이가 난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 왔다.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이 거의 없다. 결국 시누이가 사는 지방으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고 작년에 아이를 출산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도 남편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수시로 나를 폭행했고, 내가 신고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빼앗아 부수곤 하였다. 시누이와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났는데 시누이의 폭언도 심했고 내게 막무가내로 힘든 집안일을 시켰다.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참고 살았는데 남편은 특하면 이혼 후 나더러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중졸 이하 비율, 외국인 아내 11.2%, 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23.2%(238명), 남편 29.6%(304명)]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2.1%(22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9.1%(93명)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0.1%(1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0.6%(6명)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의 비율도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외국인 아내 11.2%, 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의 89.0%, 한국인 남편의 56.7% 안정적인 수입 없어 경제적 빈곤 심각

외국인 아내는 주부(383명, 37.3%), 한국인 남편은 무직(240명, 23.4%)이 가장 많았다. 한편,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9.0%, 한국인 남편은 56.7%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95.6%(982명)와 한국인 남편의 70.1%(720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6.3%(886명), 한국인 남편의 58.6%(602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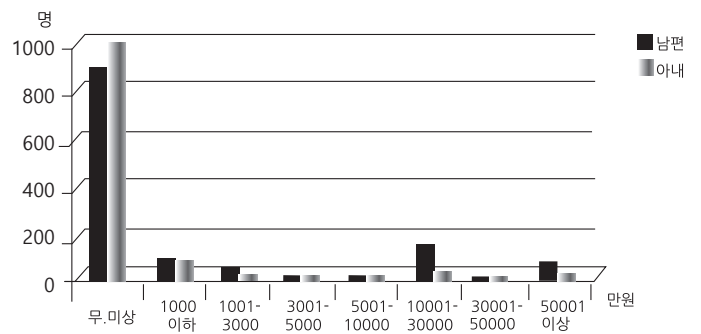
● **경제갈등, 빚, 빈곤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혼인하게 되었다. 혼인 당시 남편은 본인이 자산가이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으나 거짓이었다. 혼인 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생활비도 없었다. 가게도 망하기 직전인데 남편은 일은 안하고 가게도 내게 모두 떠넘긴 후 밖으로 돌며 술만 마시고 다녔다. 남편 앞으로 카드 빚도 많은데 잘못했다가 나까지 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렵다.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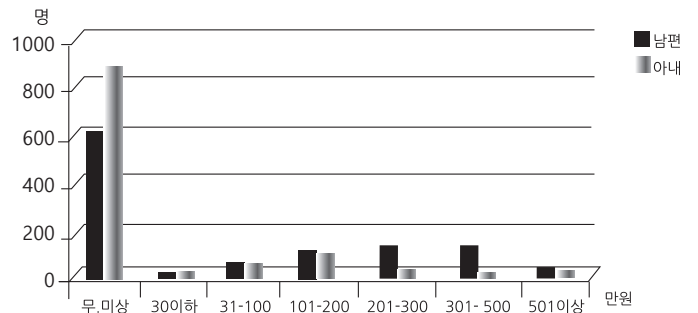
● **빚,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중국에서 왔고 결혼한 지 7년되었다. 혼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남편 빚 때문에 고생을 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이면서 나도 경제활동을 일체 못하게 하여 늘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계속 빚을 내 생활해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이라 늘 조마조마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대출받은 사실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 시누이들에게 준 후 한 푼도 받지 못해 연체가 되기도 했다. 나중에 남편 채무 문제로 인해 내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혼 후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재산 보유액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월 수입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재혼 비율 37.8%,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30.6%(314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6.7%(69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6.3%(65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4.8%(255명), 미상 31.6%(324명)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7.8%로 일반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1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1.4%(425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9.1%(93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도 8.9%(91명)로 나타났다.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31.1%(320명)[남성 초혼-여성 재혼(6.3%, 65명), 남성 재혼-여성 재혼(24.8%, 255명)]

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8.9%(91명)이었다. 외국인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을 때에는 본국에 생활비를 보내는 문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 양육비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혼 후 남편의 잦은 외박과 경제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남편이 돈만 생기면 들고 나가 며칠씩 잘 들어오지 않는다. 혼인비자 받아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 지났으나 목돈이 없어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한번 이혼하고 만난 사람이어서 참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 이혼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어 그것도 갑갑하다. 내가 전혼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은 모두 중국에 있다. 아이들 생각하면 중국에 가고 싶으나 중국에서는 벌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 그냥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일을 했으면 한다. 그 전에는 방을 남편 명의로 얻어 남편이 보증금을 들고 나간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 명의로 300만원 보증금을 걸어 남편이 들고 나가지는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 **재혼 후 아내의 가출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2009년 중국 여성과 혼인하였다. 나와 상대 모두 재혼이었다. 나는 전처와 이혼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았다. 당시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늘 나를 안타까워 하셔서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무리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 가서 한번 봤고, 바로 혼인신고하였다. 상대에게도 중국에 전혼 자녀가 두 명 있었다. 그런데 상대는 결혼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였다. 와서 일만 하였다. 그러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집을 나갔고 이제껏 연락을 끊고 지낸다. 먹고 살기 바듯해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이혼하는 방법은?

전체의 36.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0.9%(9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4.8%(49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6.0%(62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9.4%(97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16.2%(166명), 10년 이상은 51.3%(527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6.7%(377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0.9%(15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8.4%(107명), 2년 이상~3년 미만 12.2%(46명), 5년 이상~10년 미만 10.1%(38명), 1년 이상~2년 미만 4.5%(17명), 3년 이상~5년 미만 4.0%(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58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13명에 달했다. 즉,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22.4%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852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364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42.7%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러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행,
자신이 남편 폭행, 기타 순으로 이혼상담

한국인 남편은 자신이 아내 폭행, 기타,
아내의 가출 순으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347명)

- 1위 '남편의 폭행'(민법 제840조 3호)(44.7%, 155명)
- 2위 '자신의 남편 폭행'(내담자 3호)(25.4%, 88명)
- 3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생활무능력,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이 우선 순위임)
(6호)(18.4%, 64명)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680명)

- 1위 '자신의 아내 폭행'(내담자 3호)(37.6%, 256명)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거짓말·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6호)(28.4%, 193명)
- 3위 '아내의 가출'(2호)(24.1%, 164명)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3호 '남편의 폭행'이 44.7%(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내담자 3호 '자신의 남편 폭행' 25.4%(88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8.4%(64명), 내담자 1호 '자신의 외도' 3.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1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3,475명)가 제시한 사유 역시 3호(남편의 폭행 48.8%, 1,697명)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다음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폭언,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9.6%, 1,029명), 2호(남편의 가출 13.4%, 467명), 1호(남편의 외도 7.8%, 271명) 순으로 나타나 다

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사유와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폭행을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그 비율도 44.7%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 아내들이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위가 '외국인 아내의 한국인 남편 폭행'이었고, 그 비율이 25.4%에 달하며 폭력을 행사한 외국인 아내 스스로가 상담을 받기 위해 본 상담소를 방문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과거에는 본 상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반면, 근래에는 부부 싸움 중 쌍방이 폭행을 하거나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먼저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한국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외국인 아내의 체류 및 국적 취득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양육에도 걸림돌이 될 것을 고려해 이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외국인 아내가 먼저 상담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아내들이 세 번째로 많이 제시한 사유는 6호 '기타사유'인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64명 중 '생활무능력'이 32.8%(2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장기별거' 21.9%(14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10.9%(7명), '성격차이' 6.3%(4명), '경제갈등' 4.7%(3명), '불신'·'주벽'·'알콜중독'·'배우자의 이혼강요'·'고부갈등' 각 3.1%(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폭행한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사건 당일에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1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감정이 상해서 술을 마신 후 다투다가 남편 팔을 물어뜯었다. 평소에는 내가 참고 사는 편인데 그 날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나는 베트남에서 왔다. 2009년 결혼하였고, 남편과는 29살 차이가 나 현재 남편은 60대 중반이다. 남편과 나 모두 재혼이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들을 세 명 낳았다. 이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남편이 제대로 일을 안해 내가 미싱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을 원한다.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는데 남편은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한다. 이혼 후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 **한국인 남편과의 장기별거, 성격차이 등 사례**
(내담자 40대 필리핀 여성)

2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 남편과 혼인해 왔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나는 초혼이었다. 결혼해서 경상남도에서 생활하였는데 시부모와 함께 살았고, 주변에 시댁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 성격도 맞지 않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힘이 들었는데 남편을 비롯해 시댁식구들이 수시로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였다. 결국 견딜 수 없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내가 서울로 왔다. 남편은 나와 사이가 좋을 때에는 서울에 찾아오다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오지 않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15년 전 아이를 데리고 갔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혼하는 방법은?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호 즉 ‘자신의 아내 폭행’이 37.6%(2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8.4%(193

명), 2호 ‘아내의 가출’ 24.1%(164명), 3호 ‘아내의 폭행’ 2.9%(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사유는 ‘자신이 아내를 폭행’한 경우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아내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자신의 폭력 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상담을 해왔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자신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유도해 억울하다는 호소를 해 온 이들도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외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국적법상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끔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런 경우라도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6호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93명 중 ‘장기별거’가 80.8%(15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3.6%(7명), ‘거짓말’·‘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2.6%(각 5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잡은 외박’ 각 1.6%(각 3명), ‘불신’·‘결혼조건속임’·‘빚’·‘성적 갈등’·‘전혼자녀와의 갈등’ 각 0.5%(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1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141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폭언 순 52.7%, 601명), 2호(아내의 가출 26.6%, 304명), 3호(아내의 부당대우 15.0%, 171명), 1호(아내의 외도 5.0%, 5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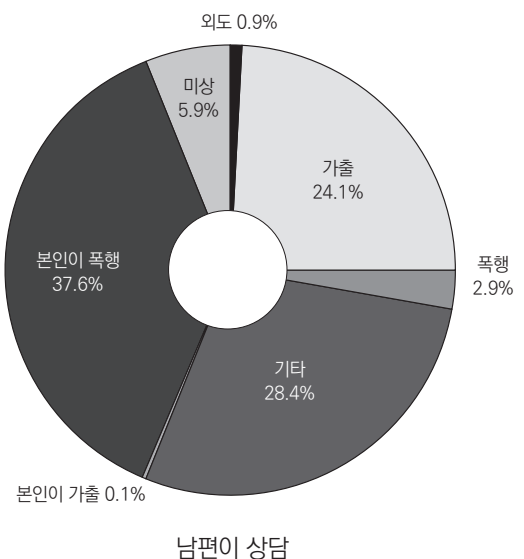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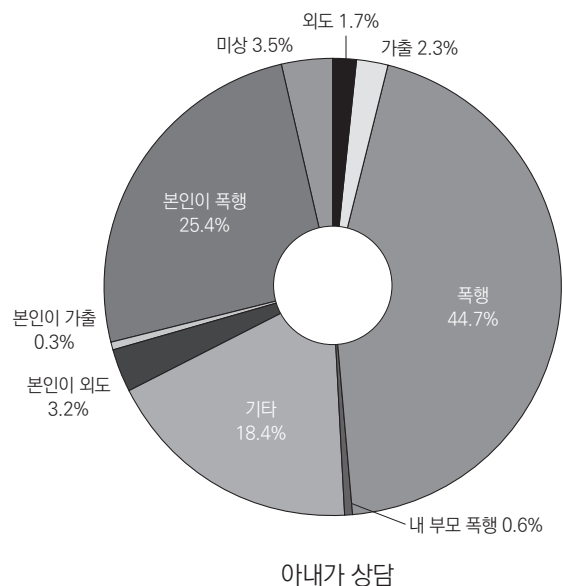
러시아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서로 언어가 달라 전처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많았다. 아이가 5살 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가버렸다.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하였다. 이후 다시 중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나는 택시를 운전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또 언어문제로 소통이 안 되었다. 내가 중국어를 모르고 아내가 한국어를 모르니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 각자 말만 하다가 결국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내가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경찰에 나를 신고하였다. 두 번째 혼인이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 **아내의 가출, 별거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20살 차이가 나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했다. 나는 지체장애인이고 차상위계층이다. 오랜 기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중 가지고 있던 현금과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국제 결혼을 하였다. 상대방은 입국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일을 하러 다녔는데 그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과소비를 하고 짜증을 많이 냈다. 그러다가 1년 전쯤 지방에 아는 언니가 있다며 잠시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 때부터 집에 오지 않고 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입국하기 전부터 내게 큰 돈을 요구했었다. 전남편과는 이혼했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내 옷이 아닌 성인 남성의 옷을 자주 샀는데 실제로 헤어진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혼 원한다.

● **아내의 입국 거부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18년 전 지인의 소개로 태국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다. 혼인신고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상대방과 연락도 없고, 오늘날까지 서로 단절된 채 지내고 있다. 나는 고시원에서 살며 기초생활수급자이다. LH 공사의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살고자 하는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 이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총 1,245건) 중 17.5%(218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보다 8.9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218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2건(10.1%),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196건(89.9%)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8.9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라크 순

그 외 이집트, 프랑스, 캐나다·대만·스페인,
스위스·네덜란드·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영국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218명 중 중국이 91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 35명(16.1%), 미국 30명(13.8%), 뉴질랜드 10명(4.6%), 베트남·이라크 각 6명(각 2.8%), 이집트 5명(2.3%), 프랑스 4명(1.8%), 캐나다·대만·스페인 각 3명(각 1.4%), 스위스·네덜란드·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영국 각 2명(각 0.9%), 네팔·호주·아르헨티나·파키스탄·말리·케냐·몽골·터키·스리랑카·태국 각 1명(각 0.5%)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태국·몽골 순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일본,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라크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22명)

1위 '자신의 아내 폭행'(내담자 3호)(54.5%, 12명)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경제갈등·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성격 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6호)(27.3%, 6명)

3위 '아내의 가출'(2호)·'아내의 폭력'(각 4.5%, 각 1명)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196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거짓말 등이 우선 순위임)(6호)(54.6%, 107명)

2위 '남편의 가출'(2호)(26.0%, 51명)

3위 '남편의 폭력'(3호)(6.1%, 12명)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호 '자신의 아내 폭행'이 54.5%(1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7.3%(6명), 2호 '아내의 가출'·3호 '아내의 폭력' 각 4.5%(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남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6명 중 '경제갈등'·'장기별거'가 각 33.3%(각 2명)이었고, 다음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성격차이'가 각 16.7%(각 1명)이었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54.6%(10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남편의 가출' 26.0%(51명), 3호 '남편의 폭력' 6.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07명 중 '장기별거'가 87.9%(9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3.7%(4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2.8%(3명), 거짓말 1.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 사항 요약

2021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총 건수는 1,245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027건(82.5%),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18건(17.5%)이었다.

2022년 3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173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16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1,245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1,027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47건(33.8%),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680건(66.2%)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2.0배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이 5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4.8%, 필리핀 3.4%, 우즈베키스탄 3.0%, 태국·몽골 각 2.8%, 러시아 2.3%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일반가정은 남편이 1~2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 연상 중 17~30년 차이, 일반가정 5.2%/다문화가정 27.5%).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교육정도가 낮은 중졸 이하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 11.2%).

외국인 아내의 95.6%와 한국인 남편의 70.1%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6.3%, 한국인 남편

의 58.6%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5.6%였으나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37.8%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2.4배 가량 높았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6.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8.4%, 2년 이상~3년 미만 12.2%, 5년 이상~10년 미만 10.1%, 1년 이상~2년 미만 4.5%, 3년 이상~5년 미만 4.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한국인 남편의 폭행, 경제갈등, 기타 사유 순으로 많았고, 한국인 남편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대화단절, 기타 사유, 아내의 가출 순으로 많았다.

김진영 상담위원



친부모 존재하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높고, 위탁의 장기화 경향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법제 개선 필요

- 친부모가 존재하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63.2%로 친부모가 없는 경우보다 높아
- 부모의 가출, 연락두절, 학대, 방임 등 친가정 복귀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
-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43.6%로 위탁의 장기화 경향 보여
-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복리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자세 아쉬워
- 아동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필요

“학대나 경제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집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제도가 ‘가정위탁¹⁾보호’인데, 국내에 약 8천 가구가 있습니다. 10대 미혼모가 낳은 갓난아기 예린 양을 만나, 19살이 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사은숙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자녀 둘이 장성하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는데도, ‘법정대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한 뉴스에서 “시설보다 못한 ‘위탁가정’, 자식처럼 키워도 ‘동거인’²⁾”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의 제목만으로도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위탁 부모의 권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단

순한 불편함을 넘어 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현장에서도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이 친권자의 실질적 부재, 비협조 등으로 인해 행정서류 제출과 의료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여권 발급, 문화바우처 이용 등에 큰 불편이 생기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소는 위탁가정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동 권리보장원(舊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으로부터 사례를 위탁받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본소의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소송구조 사건은 2016년 6건으로 시작하여 2019년 24건, 2020년 52건, 2021년 74건으로

1)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 제도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시설보호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가 필요한 아동보호체제로 평가되고 있다.

2)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8133_34936.html (방문일자 2022. 4. 25)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이것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가정위탁 현장에 본소가 독보적으로 꾸준히 법률구조를 지원해 옴으로써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권리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소가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송구조 사건(74건)³⁾의 상담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서면 및 법원의 재판 내용 등을 토대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탁현황, 소송사유 및 소송결과를 분석하고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소송구조 대상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1) 성별

2021년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62가정으로 위탁부모 62명, 위탁아동 68명이었다. 위탁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9명(14.5%), 여성 53명(85.5%)로 위탁부모 중 위탁모의 신청이 6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법에서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어(민법 제930조 제1항), 위탁부모 중 한 명만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위탁부모 중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 41명(60.3%), 여아 27명(39.7%)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위탁부모의 연령을 보면 50대(35.5%), 60대 이상(32.2%), 40대(24.2%), 30대(8.1%)의 순으로, 30대부터

70대까지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중이 67.7%로 높게 나타났는데, 소송구조 사례를 보면 자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 및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며 위탁보호를 지정받는 경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4-7세 구간과 8-13세 구간에서 각각 28명(41.2%)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1-3세 10명(14.7%), 14-19세 2명(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친부모의 존재여부

친부모가 있는 위탁아동 43명(63.2%), 친부모가 없는 위탁아동 25명(36.8%)으로, 위탁아동 10명 중 6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표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위탁부모	성별	남성	9	14.5
		여성	53	85.5
	연령	30대	5	8.1
		40대	15	24.2
		50대	22	35.5
		60대 이상	20	32.2
	계		62	100
위탁아동	성별	남아	41	60.3
		여아	27	39.7
	연령	1-3세	10	14.7
		4-7세	28	41.2
		8-13세	28	41.2
		14-19세	2	2.9
	친부모 존재여부	있음	43	63.2
		없음	25	36.8
	계		68	100.0

3) 2021년 가정위탁아동 관련 소송구조는 친권상실 등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등을 포함하여 74건으로, 총 62위탁가정(위탁부모 62명, 위탁아동 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 보호유형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보호유형별 비율은 일반 위탁이 25건(40.3%), 대리양육위탁이 20건(32.3%), 친인척위탁이 17건(27.4%)순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나 친인척양육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가끔 연락이 되어 친부모의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위탁의 경우는 친부모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부모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탁기간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은 36-72개월 미만(33.9%)이 가장 많았고, 12-36개월 미만(30.6%), 1-12개월 미만(25.8%), 72개월 이상(9.7%)의 순이었다.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43.6%에 달하여 가정위탁이 장기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13세의 위탁아동이 82.4%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에게 양육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의 상당 기간을 위탁가정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

의 경우, 아동을 한참 동안 보호하다 위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양육기간은 위탁기간보다 훨씬 길 것으로 보인다.

〈표 2〉 가정위탁 현황

위탁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보호유형	대리양육	20	32.3
	친인척	17	27.4
	일반	25	40.3
위탁기간	1-12개월 미만	16	25.8
	12-36개월 미만	19	30.6
	36-72개월 미만	21	33.9
	72개월 이상	6	9.7
계		62	100.0

3) 위탁사유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의 가출/연락두절이 된 경우가 37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수감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입원으로 위탁된 경우가 19건(30.6%), 학대/방임 14건(22.6%), 이혼/별거 13건(21%), 미혼모시설/입양시설에 맡겨진 경우 12건(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가 10건(16.1%),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6건(9.7%)이었다.

부모의 사망과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사유를 제외하고,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방임,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친부모의

〈표 3〉 위탁사유

위탁사유 (중복가능)	구분	빈도(건)	비율(%)	전체(건)	전체(%)
	부모의 사망	10	16.1	62	100
	부모의 가출/연락두절	37	59.7	62	100
	부모의 이혼/별거	13	21.0	62	100
	부모의 수감/질병	19	30.6	62	100
	부모의 학대/방임	14	22.6	62	100
	베이비박스(아동일시보호소)	10	16.1	62	100
	미혼모시설/입양시설	12	19.4	62	100
	부모의 위탁/입양 의뢰	6	9.7	62	100

4) 가정위탁은 위탁형태에 따라 대리양육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돌봄이나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탁아동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II.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1. 사건별 분류

2021년에 진행한 소송구조 총 74건을 살펴보면,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42건, 56.8%). 그리고 위탁아동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⁵⁾이 10건(13.5%),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13건(17.6%), 위탁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모의 친양자 입양 허가 사건이 1건(1.3%) 등이 진행되었다. 위탁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명으로 남긴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도 1건(1.3%) 진행되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 사건도 5건(6.8%) 있었다.

2. 소송사유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 원인으로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을 꼽았다(55건, 74.3%). 또한 친권자가 아동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아동의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 등을 개통하는 등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친권남용을 막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경우도 12건(16.2%)이 있었

으며, 위탁아동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소송을 결심한 경우도 7건(9.5%) 이 있었다. 이처럼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위탁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바가 컸다.

3. 소송 결과 및 기간

2021년에 진행한 사건 중 2022년 4월 현재까지 44건(59.5%)이 종결되었고, 취하와 각하를 제외한 40건 중 37건이 인용 판결을 받았다(승소율 92.5%). 재판 청구에서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21건(47.8%),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20건(45.4%),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건(6.8%)으로, 10건 중 9건의 사건이 6개월 내에 종결되었다.

〈표 4〉 소송 상황 및 기간

항목	구분	빈도(건)	비율(%)
사건명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42	56.8
	특별대리인 선임	10	13.5
	미성년후견인 선임	13	17.6
	친양자입양	1	1.3
	채무부존재확인	1	1.3
	성변경	5	6.8
	미성년후견인 임무수행 처분명령	2	2.7
소송 사유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양육 안정성)	55	74.3
	정체성 혼란, 위축	7	9.5
	친권남용	12	16.2
소송 현황	진행	30	40.5
	종결	44	59.5
계		74	100
소송 기간	3개월 미만	21	47.8
	3-6개월 미만	20	45.4
	6개월-1년 미만	3	6.8
계		44	100.0

5)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이들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등의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등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으며,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참조). 한편 친권자는 자신과 자녀 사이 또는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6) 참조). 이는 후견감독인이 없는 후견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민법 제949조의3 참조).

〈표 5〉 소송 결과

종결사건	결과			승소율 ⁶⁾ (%)
	승소	기각	기타 ⁷⁾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17	0	2	100
특별대리인 선임	7	3	0	70
미성년후견인 선임	6	0	2	100
성변경	4	0	0	100
미성년후견인 임무수행 처분명령	2	0	0	100
채무부존재확인	1	0	0	100
합계	37	3	4	92.5

Ⅲ. 소송구조 사례 및 문제점

1.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의 지위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법상 친권상실의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정되어 있어(민법 제924조 제1항), 친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위탁아동은 결국 본인이 직접 친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심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서는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의 청구권자로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32조)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이해관계인을 위탁부모, 후견인후보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보고⁸⁾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⁹⁾ 이러한 사정으로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그동안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하여왔다. 물론 위탁부모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아동을 청구권자로 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하면서 위탁부모를 위탁아동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건에서 조차 위탁부모에게 법률상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경우도 있다.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부모는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위탁아동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해줄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들이다. 반면 보호시설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어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매우 어리거나 질병이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원의 일관되지 않는 법 해석으로 절차는 지연되고 위탁아동 보호에 대한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6) 승소율 : (승소)/(승소+기각)

7)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취하 2건,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취하 1건, 각하 1건이다.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9),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8면.

9) 천정환(2021), “위탁가정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을 진행하며”, 가정상담 통권 457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1면.

사례 1.

내용

위탁아동은 병원에서 주는 흔한 배냇저고리만 돌려져 친 부모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다. 아동은 20년 6월경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잠시 보호를 받다가 미성년후견인후보자(위탁부모)가 20년 10월 ○○시장으로부터 위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위탁아동을 양육하여 오고 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당시부터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입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걱정되었고, 위탁아동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가정위탁 결정을 받았다. 위탁아동은 혈관종 등의 질병으로 치료와 약 복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고 위탁부모의 보살핌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없어 병원 진료 등 행정상의 어려움을 매번 겪게 되어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본소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결과

위탁아동은 ◇◇아동일시보호소에 있는 동안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소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가정위탁이 결정되어 시설을 퇴소하면서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취소되었고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탁부모의 지위만으로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각하하였다. 해당 사건은 위탁부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 위탁아동을 청구인으로 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다시 청구한 상태이다.

사례 2.

내용

위탁아동은 2015년 12월경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친부모는 미성년자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는 메모가 함께 남겨져 있었다. 미성년후견인후보자(위탁부모)는 ○○가정위탁센터의 소개로 위탁아동을 만나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위탁아동을 양육하여 오고 있다. 위탁아동은 신생아 검사에서 귀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가와사키병을 앓았으며,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기도 하였다. 위탁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의료검사와 치료를 통하여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였다. 그러나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없어 병원 진료 등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탁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와 준비하여 줄 일이 많아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본소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위탁아동을 청구인으로 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미성년자인 위탁아동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으로 위탁부모를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장 등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될 뿐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인 아동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위탁부모가 ◇◇시장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보호자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탁부모의 지위만으로 위탁부모를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여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을 취하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우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없이 위탁아동을 청구인으로 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다시 청구한 상태이다.

2. 후견임무대행자 선임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 낭비

민법 제927조의2는 친권이 상실되거나 일시 정지, 제한 되었을 때 친권자의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친권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권상실 심판에 의해서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친권자가 아니었던 부 또는 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동안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불가능하며, 이 때 법원은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권상실 심판에서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이 선고되더라도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탁부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되어 다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한 2013년 개정 민법에 의한 것이다. 해당 규정이 단독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친권상실 이후에도 위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부재는 당연한 것이고 후견임무대행자가 선임되어 부재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절차가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송구조 사례 중에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서 위탁아동은 태어난 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친생부의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다리기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일부러 미루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사례3.

내용

2009년 12월경 위탁아동들의 부모는 이혼하면서 친부를 친권자로 지정하였다. 이혼 후 친모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친부는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하였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등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방임하였고 아이들의 후원자였던 미성년후견인후보자(위탁부모)는 2016년 9월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위탁아동들을 양육하여 오고 있다. 위탁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에도 친부는 위탁아동들 명의로 인터넷, 핸드폰 등을 개설하여 530만 원 가량을 연체한 상태였으며 위탁아동들 명의로 학습비를 신청하여 지급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고 있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등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일시적인 도움만으로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친부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본소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결과

위 사건의 경우 위탁부모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친부가 친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어 친권상실이 선고되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제927조의2, 제909조의2)에 따라 단독친권자가 아닌 모 등의 친권자 지정 청구 여부를 기다린 다음 위탁아동들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탁부모는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이에 위탁부모는 또다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4.

내용

위탁아동의 친부모는 2013년 9월경 재판상 이혼하였고 친권자로 친모가 지정되었다. 위탁아동은 2008년 5월경에 태어났으나 친부는 지적장애 2급으로 아이가 태어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친모와 별거 중인 상태였다. 친권자인 친모 또한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 하지는 못했으며, 아동의 외조모와 미성년후견인후보자(위탁 부모)인 이모가 위탁아동을 계속 양육하여 오다가 2019년 5월 친인척 가정위탁을 결정받았다. 친권자인 친모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이 쇠약해지고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위탁아동은 5세 때 사회성미약자로 장애등록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아 현재까지 특수학교를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위탁부모의 노력으로 위탁아동은 심리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위탁부모는 입학, 병원 치료, 핸드폰 개통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마나 친모가 있는 보호시설에 찾아가 동의를 받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호시설 방문이 제한되면서 각종 서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위탁아동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위탁부모는 생활 전반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본소에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해당 사건 또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하여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제927조의2, 제909조의2)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아닌 부 등의 친권자 지정 청구 여부를 기다린 다음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탁부모는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위 기간이 도과한 후 별도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Ⅳ. 소결

다수의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에서 병원, 학교 등에서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위축 등을 겪고 있었다. 위탁부모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위탁아동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고자 미성년후견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소송구조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사례1과 사례2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으로 사례1은 위탁부모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한 사례이며, 사례2는 위탁부모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위탁부모가 청구권자인 위탁아동을 대리할 수 있도록 청구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기각된 사례이다. 사례1과 사례2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위탁부모를 인정해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민법 제928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으로 위탁부모를 인정하여 주거나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라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탁부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그 후 가정위탁보호 결정으로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아동의 후견인

지정이 취소되어 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이 부재하게 된다. 한편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점¹⁰⁾과는 대조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위탁아동은 친권자의 부재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서조차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상태로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 지난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사이에 양육 상황의 불안정 등은 모두 위탁아동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 결정 시 위탁부모에게 임시후견인 또는 후견임무대행자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선임 절차 시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례만을 소개하였으나 친권상실 절차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도 본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는 친권상실에 대한 청구권자로서 위탁부모는 인정되지 않고 해당 절차에서 위탁아동에 대한 특별대리인이 되고자 하더라도 법원은 위탁부모를 이해관계인으로 볼 것인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소송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위탁부모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¹⁾

또한 소송구조 사례를 통해 보면 법원은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3과 사례4는 친권상실 이후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바로 선임되지 못하고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이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친권상실 절차(1단계), 단독친권자가 아닌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 여부를 기다리는 절차(2단계),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3단계) 등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에서 법원이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안을 3단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친권상실

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하는 이유는 위탁아동들에게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거나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등을 조사하여 소재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바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위탁아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아동 복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21년은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시설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 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약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위한 보호방안으로 가정위탁제도를 두고 있으나 친권을 남용하는 친권자 혹은 친권자가 아닌 양육에 관심이 없는 친생부모의 허락까지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에게 후견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위탁가정에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아동을 결국에는 친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곳이 위탁가정이라고 여기며 그들의 역할을 너무나 축소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인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친권의 부재와 남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시기에 위탁아동을 대리할 수 있도록, 아동을 중심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혜경 상담위원

10) 국제아동인권센터(2021), 「2021년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148면.

11) 김상용(2017),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7면.

가정폭력상담 전문 기관으로 (2)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8월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면서 8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상담소를 가정보호 사건 행위자에 대한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상담소는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한 방법으로 상담교육을 하게 되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은 폭력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과정으로 주1회 2시간씩 실시했다. 상담소에서 초기에 시행했던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노 조절 프로그램

폭력의 속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폭력적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폭력의 연관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이완훈련을 실시하며, 타임아웃 기법을 포함한 안전장치와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분노가 만들어지고 표현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분노 표

현의 이득과 손해 등 분노 조절에 관한 자기 분석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2)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부부 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기술 훈련과 부부 역할극을 통해 협력과 동반자 의식을 계발하고 새로운 성장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여 부부 생활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소그룹, 집단상담 실시

가해자 집단을 소그룹으로 묶어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집단토론을 하거나 심리극 및 역할극을 통해 자신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집단상담에서는 우울, 좌절 등 감정 조절을 통한 분노 통제 기술, 스트레스 해소 기술,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등을 훈련한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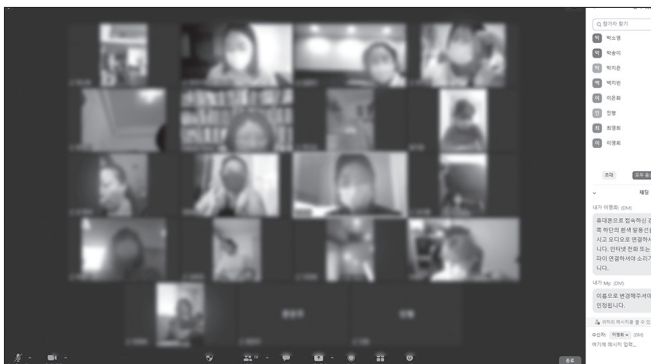
(4) 상담 참관 실시

가해자로 하여금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상담을 참관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원인 및 부부폭력 실태를 인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

(5) 상담소 교육 프로그램 수강

상담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법률강좌 및 교육강좌를 수강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인성교육과 사회적응과정을 훈련시킨다.

편집부



▲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프로그램까지 적극 활용하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상담을 통해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교정해
새로운 부부관계 형성해 나가기도

2020버7**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3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9회 등 20회

상담기간

2020. 5. 19. ~ 2020. 12. 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2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녀(11세, 8세)가 있다. 행위자는 2020년 2월 처가에 갔을 때 편식을 하는 아이들을 훈계한 일로 아이가 체하여 병원에 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비난을 받고 말다툼한 이후 피해자와 냉담하게 지냈다. 2020년 2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술을 마시고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언급하자 화가 나 이혼하자고 하며 과도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과도를 식탁에 던져 식탁 위에 놓여있는 유리를 깨트리 기물을 파손하였다. 놀란 큰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 시 피해자는 갈등요인으로 소외감을 꼽았다. 행

위자에게 중요한 사람은 시가 식구 - 아이들 - 피해자 순으로 아내인 자신은 3순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행위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부모 형제와 이혼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하고 죽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기에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음주 횟수와 음주량 줄이기, 피해자는 나쁜 말 자제하기로 정하였다. 부부는 실천과제를 잘 이행하면서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중 행위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왜곡하고 감정 조절을 잘못하는 점에 기인한 아쉬움은 있었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좋아진 점으로 부부간에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고 대화법을 이해한 점을 꼽았으며,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6~7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가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툼 후 먼저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한 점을 평가하였으며 보완할 점으로 행위자의 감정 조절을 꼽았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좋아진 점으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마음이 있음을 확인한 것을 꼽았고, 사건 당시나 현재의 부부관계를 모두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보완할 점으로 대화를 꼽았다. 향후 실천사항으로 피해자는 대화 시 자신의 밑 마음을 설명하며, 행위자는 피해자의 밑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6**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0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관계인 : 천주교 이주민상담실 수도자)
등 13회

상담기간

2020. 6. 19. ~ 2020. 12. 1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 지 1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 1남(16세, 12세)이 있다.

행위자는 2002년에 중남미국가로 해외근무를 갔는데 그때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현지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살다가 함께 귀국 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평소 싸움이 잦았고 3년 전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 중이다. 2020년 1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녀들과 함께 있던 중 퇴근한 피해자가 “왜 집에 왔냐, 다시는 오지 말아라,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죽는다”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으라는 주문결정을 하였다.

상담자가 피해자와 전화연락이 안되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천주교 이주민상담실의 수도자가 전화연락을 해왔다. 피해자는 “자기가 왜 상담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남미 이주민공동체 모임에서 알게 된 수도자와 의논 하였고 한국어 구사가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도자가 연락한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 피해자도 같이 상담을 받으라는 주문 결정을 내렸다는 점,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해자와 상담한 결과를 행위자 상담에 참고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수도자와 함께 본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 및 바라는 바 등을 개진하였다.

피해자는 3년 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1년간 살며 모은 돈으로 집을 얻어 살면서 반조리음식 판매점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가 집을 나온 이유는 행위자가 화가 나면 피해자와 자녀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고, 보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이었으며, 일관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며 버는 돈으로, 행위자의 통제나 구박을 받지 않으며 지내는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자신은 행위자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행위자가 자녀들을 만나는 것은 좋다고 하며 특히 본 사건을 신고한 딸을 원망하지 말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랐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바라는 바는 없지만 자녀들의 통신비 및 교통비로 5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행위자에게 매월 송금을 권하였는데 행위자가 이에 동의하고 이행하였다.

행위자는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를 배려하거나 따뜻하게 포용하지 못한 점과 아버지 역할을 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행위자는 매월 2회 주말에 자녀들을 만났는데 이전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또한 모든 것을 피해자의 의사대로 할 것이며 이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혼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별거하는 것에 만족해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에 의하면 12월 첫 주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예약한 식당에서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하였는데 식사비도 피해자가 지불하였다. 그리고 종결상담일 전날은 피해자가 일을 하는 날이어서 행위자가 피해자 집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고 딸이 “아빠가 이상해졌다”고 했는데, 자신이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이 놀아주는 변화를 말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지금 이 상태대로 좋고, 혹시라도 피해자가 재결합 의사를 가진다면 더 고마운 일이라고 하였다.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의식 개선,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의식 개선, 배우자의 의사 존중 등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5

●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Q 문 16 | 이혼소송을 하고 싶는데 제가 원하면 이혼이 되는지요?

A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빚, 도박, 생활양

식 차이, 종교갈등, 성격차이, 성적 갈등, 신체적 질병, 정신병, 마마보이(걸), 주벽, 알코올중독, 무사·모욕, 폭언, 자녀학대, 기물파손, 잦은 가출, 잦은 외박, 장기별거, 애정상실, 대화단절, 시가와 갈등, 처가와 갈등, 전혼자녀와 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도박, 고부갈등, 중독증,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17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A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의뢰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의뢰인은 2남 1녀 중 차남으로,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뿔뿔이 헤어져 한 명씩 친척 집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 친척 집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였고, 이때 친척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에 종가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분실하였고, 30대에 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기록에 본인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인 명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는데, 의뢰인이 몇십 년 동안 일하며 번 돈을 지인이 모두 인출하여 사라지는 일마저 발생하였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자 의뢰인은 일용근로자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최근 법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기초안전교육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의뢰인은 일용근로자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몇 년간 노숙생활을 하다가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노인기초연금신청 및 기초수급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구청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적지를 기억하고 있어 구청에서 이와 일치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었으나 위 서류에 모두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민자료에 의뢰인의 십자문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구청에서는 의뢰인이 위 서류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통해 새로이 신분을 만들기 위해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의뢰인과 위 서류상의 인물이 동일인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증명서의 발급도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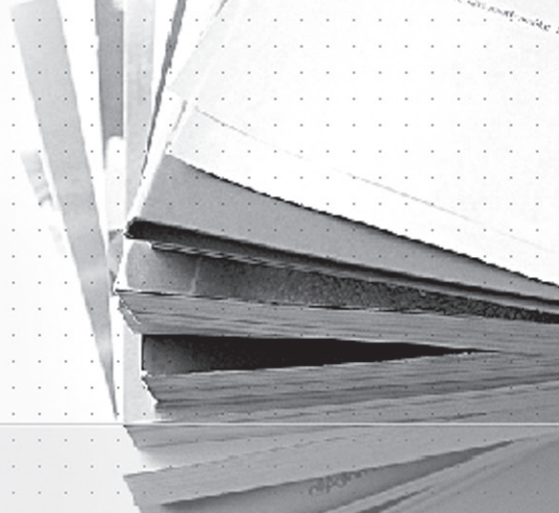
구청에서 발급받은 제적등본에 의하면 의뢰인의 형은 이미 사망하였으나 여동생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동생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사 여동생과 연락이 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신분증이 없어 법원의 수검명령 등을 통하지 않고는 유전자검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부여 거부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의뢰인이 위 제적등본 상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 다시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문제와 가사사건인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상 수검명령을 통하여 여동생과의 유전자검사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후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여동생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명하는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검명령을 송달받은 의뢰인의 여동생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어릴 때 헤어진 의뢰인을 찾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유전자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여동생 간에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는 취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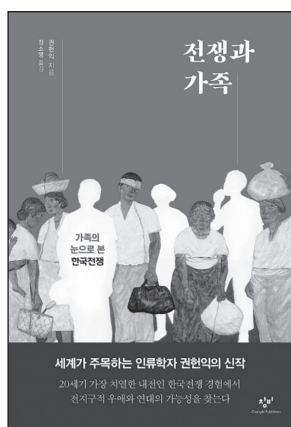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

권현익 지음 정소영 옮김

창비, 2020



1983년 여름, 텔레비전 앞에 휴지통을 놓고 앉아 있던 기억이 난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다. 보기에 낯은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만나 얼싸안고 울고 불고하는 장면을 보느라 청소년인 나도 눈물 닦은 휴지를 버리기 위해 휴지통을 끌어안은 채 텔레비전 앞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망국과 분단의 한은 현대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 모른다. 세대를 내려올수록 조금씩 열어지긴 했겠지만 말이다.

우리 사회의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전히 아니 앞으로도 일제강점기와 분단과 한국전쟁은 중요한 쟁점이다. 같은 전범국이면서도 독일은 자국이 분단되었고 히틀러의 무덤도 남기지 않았으며 히틀러를 추모하면 범죄로 처벌을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전범국 일본 대신 35년간 식민지로 착취당했던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도조 히데키 등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에 각료들이 때마다 봉물을 보내고 참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치른 전쟁을 대가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얻었고, 오늘날에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친선의 탈을 쓴 매국 친일이 당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분단과 전쟁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2020년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문화사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에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간직한 살아 있는 전쟁의 기억이 그 생을 다할 때가 된 이 시점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다고 한다. 전쟁의 경험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전쟁을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냉전 연구로 세계 인류학계에서 독보적 위치에 오른 권현익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는 『전쟁과 가족』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양민들이 처했던 현실과 폭력이 작동한 방식을 가족과 민족의 관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책은 한국전쟁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국전쟁 3년 동안 민간인 사

상자가 200만이 넘었는데, 그 수는 전쟁 중에 사망한 모든 교전국 전사자 총수보다 많았다. 군인도 아닌 이토록 많은 가족, 친지를 잃었음에도 한국인들은 전쟁에 대해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 지은이는 한국전쟁에서 작동한 폭력기제가 휴전 후에도 가족과 친족과 공동체 속에 강력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의 끔찍한 기억을 망각 속에 밀어 넣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전쟁의 기억들이 문학작품 등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다. 내가 읽은 많은 문학이 특히 분단과 전쟁에 기대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박완서의 많은 소설이 그랬고, 지금도 강렬하게 기억하는 윤홍길의 〈장마〉 그리고 대학 신입생 때 읽고 책 제목을 평생 관용어로 쓰고 있는 〈어두운 기억의 저편〉도 그렇다. 그렇게 이 책은 박완서·최인훈·현기영 등 작가의 작품과 경상북도와 제주도의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전쟁이 가족과 친족에게 끼친 영향을 탐사하였다.

또한 지은이는 전쟁의 상흔을 용기 있게 대면하려는 지역공동체의 노력에 대해 유가족의 발언을 인용하여 '소리 없는 혁명'으로 칭하였다. 제주에서 전개된 마을 단위의 노력은 추념식 등의 공식행사로 발전되었고 공동체를 사회와 분리하는 근현대 세계의 이념적 경향을 이겨내고 소시에타스(societas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질서)와 시비타스(civitas 영토와 소유에 기초한 시민적, 정치적 사회)가 합심하여 놀라운 정치적 공간을 창출했다고 분석하며,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는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김성보 연세대 국학연구원장의 서평처럼 이 책은 "전쟁과 학살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성찰과 치유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숙현 편집부장



법무부 인권국, 본소 방문

지난 4월 8일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이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과 민간 법률구조법인의 발전 방향 및 상담소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상담소 라운딩이 이어진 당일 정책현장 방문에는 법무부 김종현 인권구조과장 및 홍지향 사무관, 그리고 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및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관련사진 2면)

이레상담교육원 수강생 대상 법률구조 체험교육

본소에서는 4월 26일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절 종사자 양성 교육을 위해 교육생 및 직원들 15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수강생들은 먼저 상담소의 법률구조 역사 및 가족법개정 운동사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천다라 상담위원의 설명을 들으며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김진영 상담위원이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이혼 소송 관련 판례의 동향에 대해 강의하였고, 강의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법률구조 사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관련 사진 2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4월 28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분노는 과학이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병후 원장은 ‘분노’라는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르며 표현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모두 3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강의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진행되며 다음 강의는 5월 2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

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4.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가족법)

- 복미영 상담위원

4.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가정폭력관련법)

- 복미영 상담위원

4.20.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2022년 4월 상담통계

총 건수 5,517

법률상담 (4,850)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807	3,950	91	1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39	50	78

• 인터넷 정보 이용 46,068 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850건(87.9%), 화해조정 539건(9.8%), 소장 등 서류작성 50건(0.9%), 소송구조 78건(1.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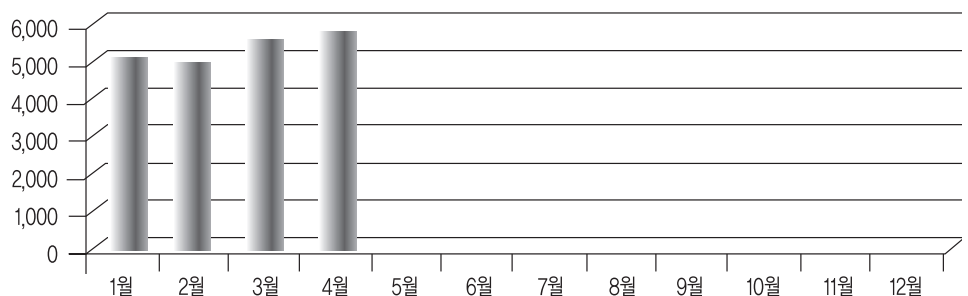
법률상담 4,85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3월에 비해 남녀관계(0.4%→0.5%), 부부갈등(2.7%→4.9%), 이혼(20.7%→22.3%), 사실혼해소(0.9%→1.0%), 양육비(7.5%→7.6%), 파혼(0.2%→0.4%), 혼인무효·취소(0.3%→0.4%), 이혼무효·취소(0.3%→0.4%), 부양(1.8%→1.9%),

가족관계등록부(3.1%→4.0%), 성변경(1.0%→1.3%), 미성년후견(0.4%→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그 외 개인회생(0.2%→0.3%)에 관한 상담도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85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07건(16.6%), 전화상담 3,950건(81.4%), 인터넷상담 91건(1.9%), 순회상담 1건(0.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2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517건이었다. 상담

**2022년
월별
총건수**



- 4.22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담사 및 직원 대상 가족법 및 가정폭력
특별법 강의
- 김진영 상담위원
- 4.26. 법률구조체협
: 이레가정폭력상담원교육
- 김진영/천다라 상담위원
- 4.27. 구세군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신용회복법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13일 서울가정법원 이
혼 등 조정사건을 진행하였다. 14일 온라인으로 진행
된 기재부 주관 예산 대면심사, 26일 기재부 2023년
예산설명회에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참석하였다. 21
일 이화여대 젠더변영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
분과회의의 위원으로 '가족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18일 서울가정법원 제
6회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가정폭력행
위자에 대한 보호처분(4호, 5호, 7호, 8호) 집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본소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수탁상
담 현황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21일
에는 이화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변화하는 가족다
양성과 젠더」 학술세미나(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하였
다.

고맙습니다

2022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학생 자원봉사

김가령, 김나영, 김도연1, 김도연2, 김민제, 김민주,
김상은, 김승현, 김연주, 김영지, 김 원, 김지민, 김지유,
김지현, 김태은,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효진, 노현정,
문송지, 문연수, 민지용, 박도윤, 박선우, 박세현, 박아영,
박태희, 배호진, 백소연, 봉수빈, 송은하, 신새미, 신수민,
안홍준, 오수민, 이서현, 이세진, 이수민, 이수정, 이수지,
이승준, 이예원, 이진우, 임가현, 임서윤, 장보민, 장아현,
장지수, 전우정, 전준혁, 정유나, 정은영, 정지현, 정채연,
정희재, 조예원, 최서연, 최세은, 최신양, 한기연,
허경호 님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황순찬, 이서원, 정운경,
장희숙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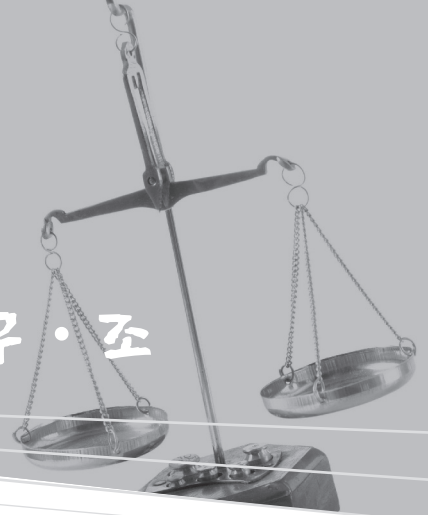
김용현, 정민영, 김영수, 이현혜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
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
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업실패와 장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01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1990년경 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다. 직원 10명과 함께 영업을 이끌어 나가던 중 IMF 외환위기로 거래처가 부도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어떻게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장 직원들의 월급 등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를 메꾸면서 영업을 하였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잦은 가정불화가 발생해 이혼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며 약 10년 간 꾸준히 이자납입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채무를 2/3 가량 변제하였고, 2019년경 빚을 내서 술집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20년경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가게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폐업을 하였다. 다시 6,5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택시회사에 입사하였지만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장애와 수술후유증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이에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4.)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54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대학생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도 나빠져 그만두었다. 이후 동거인과 함께 자금을 모아 카페를 창업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경기침체로 장기간 운영난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신청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건강회복에 전념하면서 카페의 운영난을 극복하고자 예전에 하던 프리랜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런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였다. 이후 동거인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보증금과 현금, 채무 등을 반으로 나누게 되었다. 정산을 하고나니 신청인에게 남은 2,750만원의 채무만 남았다. 신청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경력단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직이 되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위해 카드돌려막기까지 하다가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3,5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4.)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277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지만 홀로 계신 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신청인이 장기간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경제형편이 어려워졌다. 10여 년이 넘게 병간호를 하며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가게 형편은 더욱 안 좋아졌고, 신청인은 건강마저 악화되어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복막투석을 받고 있으며, 뇌출혈과 뇌동맥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4. 13.)

채무자를 면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07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2008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으나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한 시기에 근로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자녀 셋을 보살피며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웠다. 신청인은 고심 끝에 학습지 회사에서 단시간근로를 시작하였다. 하지

만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좀처럼 늘지 않았고, 다달이 채워야 할 할당매출액과 학습지계약금만 늘어갔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만 쌓인 채 일을 그만두었고, 배우자는 경제적 궁핍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2019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청인은 마스크 한 장 구입할 돈이 없는 처지에 몰렸지만 다행히 구청의 도움으로 자활근로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년부터 일자리가 없어 근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아직 초등학생인 셋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구직이 어려워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3,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본인의 경제력을 과시하기만 한 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21-1-420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20대)을 두었으나, 1999년 9월 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었다. 청구인은 이혼 후 피부 관리 일을 하며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다. 그러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만도 빠듯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수급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대방은 역대 연봉을 받으면서 사건본인에게 종종 양육비 명목의 용돈을 주었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기적인 양육비가 아니었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만날 때 늘 기사를 대동하고 본인이 거주하

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경제력을 과시했지만, 사건본인에게는 가끔 보내는 소액의 돈을 명목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본인의 권위를 행사하려 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의 꿈을 이루는 데에 지원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22. 3. 1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00,000원을 2022. 4. 30.까지 지급한다[상대방은 위 돈을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청구인)로 송금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변경 판결

법률구조 2021-1-491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3년 3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인, 각 10대)을 두었으나, 2010년 10월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양육비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의 수입으로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여 오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1년 10월부터 매월 40만 원씩(1인당 20만 원)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에 상대방과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월 100~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출소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에게 청구인이 2021년 8월경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회신이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를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2.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1. 11.부터 2022. 2. 23.까지는 월 130만 원씩, 2022. 2. 24.부터 2024. 6. 29.까지는 월 6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2-1-49

담당 : 이찬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중국국적의 원고(여, 50대)는 2005년 경 피고(남, 50대)와 혼인신고 하였다. 원고는 혼인신고 후 국내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혼인수속 과정에서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와 만난 적이 없다. 원고는 최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아직도 17년 전에 한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그대로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2. 3.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6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5월 9일, 5월 23일, 6월 13일, 6월 27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5월 26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3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8일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인가?
8월 25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5월 12일	분노의 이익, 화를 잘 내면 원하는 걸 얻어요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6월 9일	분노의 결과, 화내지 않기 위해 화를 내는 거예요	
7월 13일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7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10월 12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7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가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2년 5월 20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2-3601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2년 5월 20일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심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재개안내

5.9(월) 부터 야간상담을 재개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재개 안내

5.9(월)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을 재개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 사전 예약 필수 -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가정법률 화상상담> 개설 예정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